

『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폐지이유

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
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
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
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「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